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5. 12 선고 2020가단37728 판결 [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
가액배상금]

전 문

원고A조합

소송대리인 B

피고C

변론 종결 2021. 3. 24.

판결 선고 2021. 5. 12.

주 문

1. 피고와 D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. 10. 29. 체결된 증여계약을 57,413,449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57,413,449원 및 그 중 53,100,703원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4.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○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(가지번호 포함)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별지 청구원인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○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D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(이하 '이 사건 증여'라 한다)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D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

이에 대하여 피고는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.

그러나,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D와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, D와 피고가 선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D와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○ 나아가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에 관하여 보면,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 할 것인데(대법원 2001. 2. 9.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), 이 사건 증여 이후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E조합 앞으로 근저당권(채권최고액 200,000,000원)이 설정되었음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가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57,413,449원 및 그 중 53,100,703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○ 따라서 피고와 D 사이에 2019. 10. 29.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57,413,44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,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7,413,449원 및 그 중 53,100,703원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.

○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.

판사장찬

별지